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{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 :뇌물공여·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(뇌물)방조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(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:뇌물공여방



조)·제3자뇌물수수·뇌물공여[수원지방법원 2010. 11. 17. 2009고합539, 548(병합), 553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피고인 1 외 7인

【검 사】 한정일 외 1인

【변호인】 법무법인 세종외 9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, 피고인 2를 각 징역 2년 6월에, 피고인 3을 징역 7년 및 벌금 1억 원에, 피고인 4를 벌금 1,000만 원에,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, 피고인 6을 벌금 400만 원에, 피고인 7을 벌금 500만 원에, 피고인 8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3, 피고인 4, 피고인 6, 피고인 7, 피고인 8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0만 원을, 피고인 4, 피고인 6, 피고인 7, 피고인 8에 대하여는 각 5만 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,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3년간, 피고인 5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3으로부터 2억 3,000만 원을 추징한다.

[이유]

1

【이유】

]

[이유]

[이유]

1

1

K - 1 11 .

[이유]

1

[이유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1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